- 주거시설 인명피해 저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불시 화재안전조사 안내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파트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도내 군포시 및 서울시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은 가구별 구획(양방향의 피난경로 확보 곤란), 다양한 연령대의 입주민(노약자 피난곤란), 거주자별 특성으로 인하여 화재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에 소방시설 차단·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차단 및 물건적치 행위 등으로 인한 대형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시 화재안전조사 관련 안내사항

○ **단속근거**

- 「화재예방법」 제7조(화재안전조사) 및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단서(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
-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감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

○ **조사방법 : 불시 부분조사(사전통지 생략, 소방시설 등 정상유지 조사 목적 달성)**

- ▸ 통지생략 : 「화재예방법」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제2호 단서
- ▸ 부분조사 : 「화재예방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조사내용** ＊ 화재예방 제7조 제7호(소방시설) 및 9호(피난·방화시설) 부분조사

- 소방시설 차단·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차단 및 물건적치 행위
- 수신기 로그기록 확인하여 위법사항 발견 시 의법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훼손 : 「소방시설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시설 차단 : 「소방시설법」 제56조에 따른 5년(7년,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소방시설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양주소방서에서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양주시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 주 소 방 서 장